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시설물의 종류, 신기술·특허 관련 건설 기술 업무수행 경력을 기록 관리하고, 경력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을 직무와 전문분야 구분하여 표기토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건설기술인의 영문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18조제6항 개정, 안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건설기술인 및 건설관련 업체의 해외 건설 진출 지원을 위해 영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나. 건설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 (안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신기술 지정 신청시, 시험성적서 등의 인증기관에 한국인정기구 (KOLAS)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토록 서식 개선

다. 건설기술인 경력사항 추가 기록 (안 별지 제12호서식)

건설기술인이 스마트건설기술, 시설물 종류, 신기술·특허 등 사항을 신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급 관리 세분화 (안 별지 제18호서식)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급을 직무와 전문분야별로 표기토록 서식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30. ~ 2024. 1. 9.)

3) 행정규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영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수수료칸을 삭제하고, 제4호 중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를 “시험기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수수료칸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성명란의 “영문”을 “영문(성) (이름)”으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제2호 중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을 “신청인(본인)을 대신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제2호 중 “① 직무분야”를 “① 분야”로 하고, “④ 업무분야”를 “④ 담당업무”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제1호

중 “직무분야는”을 “분야는”으로, “건설기술 관련 직무분야”를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직무분야를”을 “분야(직무분야/전문분야)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4호 중 “업무분야”를 “담당업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제14호, 제18호, 제18호의2, 제29호 서식은 이 규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신기술지정 신청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1호 및 제6호 서식은 이 규칙 공포 후 최초로 제출받은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인적 사항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② 주소		전자우편주소
소속 회사	③ 회사명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④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⑤ 입사일	⑥ 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 번	⑦ 사업기간(착공~준공)		⑧ 참여사업명			⑨ 직무분야	
	⑩ 참여기간(시작~종료)		⑪ 발주자(청)			⑫ 전문분야	
	⑬ 공사종류	⑭ 담당업무	⑮ 책임정도	⑯ 직위	⑰ 공법	⑱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⑲ 공사(용역)개요(150자 이내 빈칸 포함)			⑳ 스마트건 설기술	㉑ 시설물 종류	㉒ 신기술·특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overline{000}$
 $\overline{010}$
 $\overline{011}$
 $\overline{100}$
 $\overline{101}$
 $\overline{110}$
 $\overline{111}$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기술경력을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직인 경력증서도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①**※**▲건설기술, ②**※**시설을 종류중, ③ **※**기술, 특히란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3. 건설기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한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장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5.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주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인(본인)을 대신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뒤 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③란의 **회사명 및 대표자**는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④란의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은 소속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종(예: 도로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도청공사업·엔지니어링사업 등)과 해당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으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종을 적으며 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7. ⑦란의 사업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에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 및 준공일(또는 준공예정일)을 적으면 됩니다.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건설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9. 가. ⑨란 및 ⑩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인이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선한 직무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나. ⑨란의 전문분야는 구체적인 참여사업명이 없는 경력[예: 본사(건설직) 등]기간에는 적을 수 없습니다.
10. 가. ⑪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등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⑦란에 기재된 사업기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 등 업무(계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 등 업무(유지·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시공·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감리/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다.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되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니다.

작성 예) 201x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근무 중(이 경우 건설공사 등의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1x년 12월 25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201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13. ①란의 발주자(청)는 해당 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명·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4. ②란의 공사종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이하 "등급인정기준고시"라 한다)의 건설공사 종류 또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의 건설공사의 종류 중 대부분 및 소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5. ③란의 담당업무는 등급인정기준고시의 건설관련업무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16. ④란의 책임정도는 건설공사 등에 참여한 책임정도에 따라 등급인정기준고시의 책임정도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다만, 책임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빈칸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17. ⑤란의 직위는 해당 건설공사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어야 합니다.
18. ⑥란의 공법은 해당 건설공사 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19. ⑦란의 공사(용역)금액은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십니까.(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십니까)
작성 예) 공사(용역)금액: 500백만원
20. ⑧란의 공사(용역)개요는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공사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십니까.(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십니까)
작성 예) 공사(용역)개요: 도로확장 L=00Km, B=0m(0차선), 시상교도: L=00m, B=0m, 터널 0개소: L=0Km, B=0m 등
※ 공사(용역)개요 기재는 주요 공종만 최대 150자 이내(빈칸 포함)로 작성해야 합니다.
21. ⑨란의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원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된 경우 해당 스마트건설기술을 직접 운용(활용)한 기술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 BIM, 3D, AI, 드론, 빅데이터 등
22. ⑩란의 시설물 종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제1종·제2종·제3종)를 적으면 됩니다.

21. ㉔라의 신기술 - 특허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기술 및 제14조 신기술 및 「특허법」에 따른 특허의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 건설신기술 제000호, 교통신기술 제000호, 환경신기술 제000호, 특허 제000호
22. 인사부서란은 임명대상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직인을 날인한 사람의 부서명, 담당자 성명(인),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23. 사업부서란은 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설계도서·감동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한 사람의 부서명, 담당자 성명(인),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24. 발급번호란은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업체)에서 경력확인서 발급 시 관리하는 번호를 적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국외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② 주소

전자우편주소

소속회사

③ 회사명 및 대표자

주소

입사일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④ 해외건설업종(등록번호)

⑥ 퇴사일

전화번호

국외기술경력

⑦ 사업기간(착공~종공)

⑧ 발주국

⑨ 공사지역(국가명)

⑩ 참여기간(시작~종료)

⑪ 발주자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기타

⑫ 참여사업명

⑬ 직무분야

⑭ 전문분야

⑮ 담당업무(책임정도)

⑯ 공사종류(주 공종)

⑰ 직위

⑱ 공법

⑲ 공사(용역)개요(150자 이내, 빈칸 포함)

⑳ 공사(용역)금액(백만원)

㉑ 스마트건설기술

㉒ 시설물종류

㉓ 신기술·특허

위와 같이 건설기술인에 대한 국외공사(용역)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첨부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또는 국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건설기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다수의 국외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외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국외 경력확인서는 「공중정보법」에 따라 공증을 받으면 외국어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인(본인)을 대신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방법

- ①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타인이 또는 날인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란의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③란의 회사명 및 대표자는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④란의 해외건설업종(등록번호)은 소속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외건설관련업(예: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전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등) 해당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을 적으면 됩니다.
-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고, 현재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근무 중 ”으로 적으면 됩니다.
- ⑦. ⑧란의 사업기간은 해당 해외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하 “해외건설공사 등 ”이라 한다)에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또는 준공예정일)을 적으면 됩니다.
- ⑧. ⑨란의 발주국은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발주처(기관)가 소속된 국가명을 적으면 됩니다.
- ⑨. ⑩란의 공사지역(국가명)은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진 국가명과 시(市)까지 적으면 됩니다.
- ⑩. 가. ㉑란의 참여기간은 해외건설공사 등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계약명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재하십시오. 다만, 착공일이전 수행한 건설공사업무(계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유지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시공 등 해외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타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 ”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 ”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할 때에는 해당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야 합니다.

작성 예) 201x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근무 중(이 경우 해외건설공사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1x년 12월 25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201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 ㉑란의 발주자는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명을 기재하시고 기관의 성격에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 ㉒란의 참여사업명은 건설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해외건설공사 등의 계약명 또는 실적증명서(「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계약명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제출된 실적증명서를 말합니다)에 표기된 공사명을 적으면 됩니다.
- ㉓란 및 ㉔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인이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무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 ㉕란의 담당업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이하 “등급인정기준고시 ”라 한다)를 참고하여 적으면 됩니다.
- ㉖란의 공사종류(주 공종)는 등급인정기준고시의 건설공사의 종류 또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주 공종)은 해당 해외건설공사에 참여했던 주요공종을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종류: 공항(활주로)

- ㉗란의 직위는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으면 됩니다.
- ㉘란의 공법은 해당 건설공사 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 ㉙란의 공사(용역)개요는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해외건설공사의 공사개요를 150자 이내(빈칸 포함)에서 간략히 적으면 됩니다.

작성예) 해외공사(용역)개요: 본 공사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의 활주로 증설 공사로 주 활주로 2곳(총 1.4km)을 연장하였음

- ㉚란의 공사(용역)금액은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해외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 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㉛란의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마련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된 경우 해당 스마트건설기술을 직접 운용(활용)한 기술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 작성 예) BIM, 3D, AI, 드론, 빅데이터 등
- ㉜란의 시설물 종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제1종·제2종·제3종)를 적으면 됩니다.
- ㉝. ㉞란의 신기술·특허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기술 및 제14조 신기술 및 「특허법」에 따른 특허의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 인사부서란은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직인을 날인한 사람의 부서명, 담당자 성명(인),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 사업부서란은 착수계·준공계·공사대장·설계도서·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한 사람의 부서명, 담당자 성명(인),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 발급번호란은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업체)에서 경력확인서 발급 시 관리하는 번호를 적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종전 소속회사	주소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현재 소속회사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현재 소속회사	주소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입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 번	사업기간(착공~준공)	참여사업명			직무분야
	참여기간(시작~종료)	발주자(칭)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책임정도	직위	공법
	공사(용역)개요(150자 이내 빈칸 포함)	스마트건설기술			시설물 종류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 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0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속회사 및 기술경력 작성방법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3. 신청인(본인)을 대신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또는 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관리번호	발급번호		
(3쪽 중 제1쪽)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등급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국가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기술자격						

학력	출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교육기간	과정명	교육기관명	교육인정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1)나), 2)나)(1)·(2) 및 3)나)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시간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상훈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벌점 및	벌점			
제재사항	제재일	종류 및 제재기간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	근무기간	상호	근무기간	상호
	~		~	
	~		~	
	~		~	
	~		~	
	~		~	
	~		~	
	~		~	

성명 :

(3쪽 중 제2쪽)

1. 기술경력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공사 종류	직무 분야	담당 업무	비고
	발주자	공법	전문 분야	직위	
	공사(용역)개요		책임 정도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스마트건설기술		시설물 종류	신기술·특허	
~					
~					
~					
~					
~					
~					
~					
~					

※ 스마트건설기술, 시설물 종류, 신기술·특허는 발주청(인·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표기하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성명 :

(3쪽 중 제3쪽)

2.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통보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 경력만 해당합니다.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공사 종류	직무 분야	담당 업무	비고
	발주자	공법	전문 분야	직위	
	공사(용역)개요		책임 정도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스마트건설기술		시설물종류	신기술·특허	
~					
~					
~					
~					
~					

※ 스마트건설기술, 시설물 종류, 신기술·특허는 발주청(인·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표기하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상주: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 기술지원: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 감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상주: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 기술지원: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 업무 수행 중복기간은 건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기록함

-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최근 1년간) 용역 완성비율: %(참여 건수: 건, 완료 건수: 건)

3. 배치금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철수한 경우만 기재)				
용역명	근무형태	직책	근무기간	배치금지 기간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Certificate of Career Experience of Construction Engineer

(Page 1 of 3)

Control No.

Issue No.

Personal information

Name (in Korean)
(in English)

(in Chinese characters)

Date of birth

Address

Grade

Design, construction, etc.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Job category

Area of expertise

Job category

Area of expertis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Item and grade

Date of passing

Registration No.

Item and grade

Date of passing

Registration No.

Educational background

Date of graduation

Name of school

Department (major)

Academic degree

Education and training

Period of education

Name of course

Name of educational institution

Whether accredited as education

Hours of compulsory education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2 Item b 1) b), 2) b) (1) · (2) and 3) b) of attached Tab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 Specialized education for construction engineers who perform works related to design and construction:
- Specialized education for construction engineers who perform works related to managing construction projects:
- Specialized education for construction engineers who perform works related to quality management:

Prizes and awards

Date of conferring

Conferring institution

Category and ground

Demerit points and sanctions

Demerit points

Date of sanction

Category and Sanction period

Ground

Sanctioning authority

Places of work

Period of service

Trade name

Period of service

Trade name

~

~

~

~

~

~

~

~

~

~

~

~

210mm×297mm [plain paper 60g/m² (recycled)]

- 13 -

Name:

(Page 2 of 3)

1. Technical career background

Period of participation (date of recognition)	Name of project	Category of construction works	Job category	Assigned job	Remarks
	Project owner	Construction method	Area of expertise	Position	
	Summary of construction works (services)		Level of responsibility	Construction cost (service fee) (millions in KRW)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Types of Establishments	New technologies or Patents	
~					
~					
~					
~					
~					
~					
~					

※ In the blanks entitled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and "Types of Establishments", "New technologies or Patents," state only the works (services) reported with confirmation from the contracting authorities (authorizing or permitting agencies); and unreported works (services) may be omitted.

- 14 -

Name:

(Page 3 of 3)

2. Career background in management or supervision of construction projects

* State only the performance records of services provided as a participating engineer for the management or supervision of construction projects notified under Article 45 (1), (2), and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Period of participation (date of recognition)	Name of project	Category of construction works	Job category	Assigned job	Remarks
	Project owner	Construction method	Area of expertise	Position	
	Summary of construction works (services)		Level of responsibility	Construction cost (service fee) (millions in KRW)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Types of Establishments	New technologies or Patents	
~					
~					
~					
~					

* In the blanks entitled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and "Types of Establishments", "New technologies or Patents," state only the works (services) reported with confirmation from the contracting authorities (authorizing or permitting agencies); and unreported works (services) may be omitted.

- Period of performing work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____ days
- Full-time: ____ days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exercise of delegated supervisory authority: ____ days;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during construction: ____ days]
- Technical assistance: ____ days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exercise of delegated supervisory authority: ____ days;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during construction: ____ days]
- Period of performing supervisory jobs: ____ days
- Full-time: ____ days [multi-family housing: ____ days; facilities for public use: ____ days]
- Technical assistance: ____ days [multi-family housing: ____ days; facilities for public use: ____ days]
- Period of performing jobs related to safety management as an engineer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a construction project: ____ days

* An overlapped period of performing at least two jobs simultaneously shall be entered by dividing the period by the number of such jobs.

- Percentage of completed services for the management or supervision of construction projects (during the most recent year): ____ % (number of projects in which the engineer participated: ____ projects; number of completed projects: ____ projects)

3. Preclusion from placement (state only where the engineer was removed pursuant to Article 27 (2)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Name of service	Form of service	Job title	Period of service	Period of preclusion from placement
			~	~

This is to certify the career background of the above-stated construction engineer pursuant to Article 18 (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Date: (yyyy/mm/dd)

Head of Entrusted Institution

Official Seal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 ⑤ (생략)	제18조(건설기술인의 신고)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⑥ ----- ----- ----- ----- ----- 별지 제18호서식(영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말한다)----- ----- -----.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